

동물복지와 동물권: 인간의 태도와 법제

천명선

서울대 수의과대학 연구교수

르네상스 이후 의학은 해부학과 생리학을 중심으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게 된다. 의학자와 생물학자를 중심으로 동물의 생체해부(vivisection)가 행해졌고 이것이 대중에게 공개 강의나 강연회 등을 수단으로 쉽게 공개되었다. 그러나 동물의 고통을 전제로 한 이들의 탐구열이 항상 사람들로부터 지지를 받은 것은 아니었다.

..... 마침내 그는 개를 끌고 나왔다. 그는 개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작은 말뚝에 묶고 턱도 묶어서 물지 못하도록 한 후 다음과 같이 말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살아있는 개를 통해서 신경계의 역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경이 손상되지 않은 개는 잘 짖지만, 내가 어떤 신경 하나를 잘라버리면 짖는 소리의 반이 없어진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나머지 하나도 잘라 버리면 개는 전혀 짖지를

못합니다.” 그리고는 이 개를 해부하여 재빨리 동맥 근방의 신경을 찾아내었고, 그 이후 모든 것은 그가 말한 대로 되었다. 그가 이 신경계를 잘라내었을 때 개는 전혀 짖지를 못하고 숨만 쉬고 있을 뿐이었다.....(『지식의 원전』, 안드레아스 베살리우스 편¹⁾)

동물학대는 인간의 잔인성을 보여주는 가장 적절한 예다. 이는 근대의 산물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철학자들 뿐 아니라 일반인들의 동물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주었다. 윌리엄 호가르스(William Hogarth)의 『잔인성의 네 단계』(*Four Stages of Cruelty*, 1751)에서 묘사되는 톰 네로의 악행은 어린 시절 고양이와 개 같은 작은 동물을 괴롭히는 것에서 마차를 끄는 말과 양 등 큰 동물을 학대하고 급기야는 사람을 살해하는 행위로 이어진다. 동물학대 방지에 대한 법률은 하무라비 법전에서 이미 그 흔적을 찾을 수 있지만, 물론 이 시기의 법률은 동물을 인간의 소유물로 여기고 재산의 피해를 막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초기의 동물보호는(현재도 크게 다르지 않지만) 동물학대 방지라는 행위로 이어졌고 이는 인간이 동물을 함부로 이용하는 것을 막고자 함이었다.

동물학대 방지에 대한 근대적인 법률은 1822년 영국에서 이 법률을 제안한 정치가의 이름을 따서 ‘Martin's Act’라고 별칭이 붙은 “가축학대에 관한 법(III Treatment of Cattle Bill, 1822)”의 제정이 그 시작이다. 이후 세계 최초의 동물보호단체인 <Royal Society for the Prevention of Cruelty to Animals> (RSPCA, 1824)의 노력으로 이 법은 소 이외의 산업동물과 곰 싸움(bear-baiting), 투계 등을 금지하도록 하는 동물학대에 관한 법(Cruelty to Animals Act., 1835)으로 확대 개정되었고, 그 후 동물실험을 제한하는(1876) 등 그 내용을 첨가해오다 1911년 동물보호법(Protection of Animals Act)으로 자리 잡았다. 이런 과정들을 통해 영국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동물보호 법률을 유지하게 된다. 2006년 발효된 동물복지법(Animal Welfare Act)은 동

1) 존 캐리 지음, 박정수 등 옮김, 『지식의 원전』(바다출판사, 2004).

물학대 방지뿐 아니라 동물이 적어도 생리적인 충족 사항과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동물복지에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강력한 법적 의무를 부여했다.

동물에게 고통을 가해서는 안 된다는 윤리적인 배경을 정립한 것은 벤담(Jeremy Bentham, 1748-1832)을 중심으로 한 공리주의자들이었다. 그는 『도덕과 입법 원리 입문』(*Introduction to the Principles of Morals and Legislation*, 1789)에서 ‘동물이 고통을 느낀다는 것’이 그들의 권익을 보호해야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라고 주장했다. 이는 인간만이 합리적인 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물과 엄연히 다른 특별한 존재라는 생각에 대해서 “동물들도 사람과 똑같은 행동 패턴을 보이며 합리적이고 계획적으로 행동한다”는 반론들이 제기되면서 철학자들이 인간만이 가진 속성으로서의 이성이 과연 동물과 인간을 차별적으로 대해도 되는 기준인지에 의문을 가지면서 시작된 흐름이다. 공리주의적 철학의 기반을 세웠던 흄(David Hume, 1711~1776)은 동정심을 도덕적 사고의 기반으로 간주하고 이 동정심이 인간 이외의 다른 감수성이 있는 생명체들에게도 확장될 수 있다고 믿었다. 그러나 ‘정의’는 동등한 힘을 가진 양자 간에 이루어지는 계약관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동물을 어떻게 취급하는지는 정의에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이런 윤리적인 개념들이 현실적인 파급력을 가지기 시작한 것은 피터 싱어(Peter Singer)의 『동물해방』(1975) 이후다. 그는 이 책에서 ‘이익 평등고려의 원칙’(the Principle of equal consideration of interests)을 동물에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누구의 이익이든 상관없이 이익이라면 도덕적인 관심의 대상이라는 윤리적 원칙에 따라 유사한 이익들에 대해 동등한 비중을 둔다는 원칙이다. 타인에 대한 관심이 그가 무엇과 닮았는지 혹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 주장에 따르면 인종차별이나 지능이 낮은 사람들의 이익을 무시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 따라서 고통을 느낄 수 있는 가축을 농장에서 밀집사육을 통

해 키워내고 도살하는 행위나 합성 제품으로 대체될 수 있는 모피를 생산하기 위해 동물을 사육하거나 사냥하는 일, 세제나 화장품 등을 제조하기 위해 동물을 이용해 독성 실험을 하는 것은 윤리적으로 옳지 못한 일이다²⁾.

동물에게 고통을 가하지 않거나 동물을 잘 돌본다는 것이 결코 동물에게 ‘권리’를 부여한다는 것은 아니다. 동물이 도덕적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동물이 태어나면서부터 침해 받지 않을 가치를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이 가치는 스스로 ‘삶의 주체’임을 경험할 수 있는 존재들이 가질 수 있는 특별한 권리로서 절대적인 가치이다. 미국의 철학자 톰 레건(Tom Regan)은 어떤 이유에서든 동물을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보고 이용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동물을 먹거나, 사냥하거나 실험에 이용하기 위해 행해지는 모든 행위는 비도덕적이다. 매우 고통스러울 수 있는 전염병 연구를 위한 동물실험을 할 때 실험동물은 매우 비참한 상태에 이르겠지만, 이를 통해 엄청난 수의 인간과 동물이 질병으로 인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공리주의적 관점에서는 이 실험이 도덕적으로 수용 가능하다. 그러나 톰 레건의 ‘동물권리’적 관점에서 보면, 이 실험은 아무리 크나큰 이익을 가져온다 하더라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실험동물도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을 본질적인 권리를 가지기 때문이다³⁾.

동물권리의 극단적인 관점은 공리주의적 관점의 모순을 부분적으로 극복하기는 했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의 합의를 이끌어 내거나 실천으로 옮겨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 관점에 대한 반론은 인간과 동물의 차이가 도덕적 선택 능력에 있다는 것을 들고 있다. 동물권리에 대한 반론은 다음의 내용을 중심으로 한다. 우선, 동물을 배려하지 않는 인간은 도덕적으로 성격적인 결함을 가진 인간이다. 동물이 쾌락과 고통을 인지할 수 있다는 것

2) 김대균, “동물 보호를 위한 윤리적 근거와 방안”, 『국민윤리연구』 (2000, 44), 123-144쪽.

3) T. Regan, 『The Case for Animal Rights』(Univ. of Calif. Pres, 1985); T. Regan & P. Singer ed., 『Animal Rights and Human Obligations』(Prentice Hall, 1989), 105-114.

역시 엄연한 사실이다. 그러나 인간은 도덕적인 결정을 하기 위해 용기, 신중함, 정의감 등의 덕목을 발휘해야 하는데 동물은 그럴 능력이 없다. 따라서 인간과 동물 사이에는 종 차이가 있으며 인간만이 본질적인 권리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모든 합리적인 인간은 동등한 자격을 갖춘 도덕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이는 인간이 서로의 행동에 대해 잘잘못을 따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동물과는 그럴 수 없기 때문에 동물에게 권리를 줄 수 없다는 것이다.⁴⁾

특히 법적 지위에 관련해서는 동물의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현재까지는 불가능하다. 쉬운 예를 하나 들자면, 최근 우리나라에서 황금박쥐, 수달, 고니 등 동물과 환경단체 관계자들이 ‘충주 가금-칠금 도로확장 포장공사 구역 결정처분 등 무효 확인 소송’을 냈는데, 재판부는 “소송당사자가 자기 이름으로 재판을 청구하거나 소송상의 효과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말하기 때문에, 동물을 원고로 인정할 수 없다”고 기각했다. 또한 동물 각자의 개체성 인정이 되지 않는 상태(어느 황금박쥐가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인지 특정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폐갱도 내의 황금박쥐 전체를 대표한다고 볼 수 없음)가 문제가 되었다⁵⁾.

동물권리는 다양한 동물권리 단체들의 주장에 따른 철학적인 한 견해이며, 개인의 가치로 동물복지와 동물권리는 유사한 개념이 아니다. 미국수의사회는 공식적 인정책으로 동물복지의 추구를 지지하고 받아들인다. 그러나 미국수의사회는 음식이나 옷감, 반려 관계 및 오락과 인간과 동물 양쪽 모두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 수행되는 연구와 같이 인간의 목적을 위한 책임 있는 동물의 사용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동물권리 옹호자들의 철학적 견해와 개인적 가치를 지지하지 않는다.⁶⁾ (미국수의사회)

4) 허남결, “동물의 권리에 대한 윤리적 논의의 현황: 동물해방론과 동물권리론의 전개 과정을 중심으로,” 『불교학보』(2005, 제43호), 173-199쪽.

5) “동물은 소송 당사자 될 수 없다”, <연합뉴스>, 2008, 11, 14.

6) American Veterinary Medical Association, *Policy on Animal Welfare and Animal Rights, ACMA Directory*(Schaumburg, IL: The Association, 1994), 56.

축산업과 동물실험 종사자들은 동물권이라는 개념에 대해 매우 강한 두려움을 보인다. 이들은 오히려 동물복지라는 모호한 개념을 선호한다. 하지만 사실 동물에서의 복지(well-being, welfare) 개념은 인간에 사용되는 복지 개념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다. 인간의 복지는 만족이나 행복감뿐 아니라 때로는 스트레스를 받는 환경에서도 이루어진다. 생물학적 조건(건강, 체력)만을 전제조건으로 두지 않기 때문이다. 정신적인 가치나 교육, 교양 등을 쌓기 위해 우리는 힘든 교육과정을 거치기도 한다. ‘만족한 돼지보다 불만족한 소크라테스’가 되는 것이 높은 수준의 인간 복지에 가깝다고 여겨지는 것이다. 건강에 나쁜지 알면서도 흡연이나 음주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동물의 건강을 고려할 때 동물이 선호하는 환경이 반드시 건강, 즉 복지를 뜻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동물에게서 ‘복지’라는 단어를 쓰는 것은 단순하거나 가치중립적이기 매우 어렵다.

동물복지의 요소들을 갖춘다고 해서 동물의 이용이 정당화되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동물복지에 대해 ‘복지주의(welfarism)’라고 냉소적으로 표현하며 비판하기도 한다. 동물복지라는 용어의 모호성으로 인해 연구자들이 각기 다른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복지를 촉진시키는 조건에 대해서도 서로 다른 결론에 이르기도 한다. 단순히 ‘고통이 없는 상태’와 ‘육체적, 심리적 양면 모두 환경과 조화를 이룬 상태’는 복지의 수준이 다르다. 복지는 ‘동물 자신과 환경에 노출된 동물이 육체적, 생리적 조화를 이룬 조건이며, 그 지표는 전체적으로 정상적인 좋은 건강과 행동’을 말하지만, 복지 결핍의 좋은 지표는 생물학적 체계의 사실적 교란뿐 아니라 ‘병리학적 현상이 생길 수 있는 기회, 즉 전 병리학적 상태’이기도 하다.

그러나 동물복지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내릴 수 없다고 해서 동물복지에 대한 다양한 해석과 연구들이 무의미한 것은 절대 아니다. 동물복지에는 필수적인 조건들이 존재하며 이 조건들은 동물복지에 대한 근본적인 고찰에 이용될 수도 있다. 가장 중요한 조건은 통증, 고통, 스트레스, 불안 등의 불쾌함이 없는 상태다. 이런 상태가 지속될 때 동물의 복지는 감소된다.

또한 불안함, 지루함과 불쾌한 심리상태가 없는 상황 역시 동물복지의 중요한 조건이다. 이와 반대로 즐거운 경험과 만족감은 복지를 증진시키는 조건이 된다.

과학계에서 동물복지의 연구는 동물이 공간적, 상황적 변수에 따라 어떤 행태를 보이는지 관찰하고 분석하는데 주안점을 준다. 이는 축산업과 실험동물에 있어 사육 환경에 대한 법적 기준을 정하는데 기초자료가 된다. 세계수의사회의 동물복지 정책에 따르면, 5가지 자유가 동물복지에 있어서 필수사항으로 인식되고 있다. 5가지 자유의 개념은 밀집사육 조건에서 축산시스템의 동물복지에 대한 기술위원회가 작성한 1965년 브람벨 보고서에 기초를 두고 있다. 이 보고서는 동물에게 일어서고, 눕고, 돌아볼 수 있으며 구부리고 사지를 펼 수 있는 공간을 주어야 함을 명시했다. 이후 영국에서는 산업동물복지 자문위원회(Farm Animal Welfare Advisory Committee, FAWAC)가 설립되었고 1979년에 산업동물복지위원회(Farm Animal Welfare Council, FAWC)로 발전했다. 동물복지의 기본 조건은 이후 지속적으로 발전해서 현재의 조건을 갖추게 되었다. 2008년 동물복지 개념을 새롭게 도입하여 개정된 우리나라의 ‘동물보호법’에도 제6조(적정한 사육·관리), 제7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제8조(동물의 운송) 등의 조항에서 다음 5가지 자유가 명시되어 있다).

- 배고픔과 목마름으로부터의 자유
- 생리적인 불편함과 고통으로부터의 자유
- 상해와 질병으로부터의 자유
- 공포와 걱정으로부터의 자유
- 동물 특성에 맞는 행동 양식을 따를 자유

7) 우리나라의 동물보호법은 1991년 처음 제정되었고 가축전염병예방법과 축산물가공처리법,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 등에서도 동물보호에 대한 항목이 부분적으로 개설되어 있었지만 미흡한 점이 많았다. 세계적인 흐름과 통상 및 국제기구의 압력, 국민 여론 등을 바탕으로 2007년 동물보호법이 대대적인 개정을 거쳐 발효되었다. 2009년부터는 새롭게 제정된 실험동물법이 운영에 들어가 동물실험을 수행하는 모든 기관에서 동물실험윤리위원회를 운영하게 된다.

【새 길(2014년 3월 15일 회회)에 쓴 글】
 동물권리 운동의 실제
 【새 길(2014년 3월 15일 회회)에 쓴 글】한 법률은 동물학대에 대한 인간의 ‘심적 불편
 편함’을 계기로 하여 만들어졌다. 이 심적 불편함은 그 이후로 철학적인 근거
 거를 갖추고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 논리적으로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 법
 른을 통해 보호되는 동물의 권익은 실제로 매우 제한되어 있으며, 그 권익
 의 한계가 인간의 이익과 부딪칠 때 여전히 많은 갈등을 초래한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역사가 오래된 유럽 지역의 동물보호 관련 법안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것보다 훨씬 강력하고 세세한 부분까지 다루
 고 있다. 유럽연합은 1930년대 이후 양계산업에 도입되었던 배터리 식 사
 육을 2012년까지 전면금지하게 된다.⁸⁾ 이미 1960년대부터 각 나라별로 동
 물복지 차원에서 문제가 제기되어 왔고, 스위스, 오스트리아, 스웨덴, 벨기
 에, 네덜란드에서는 이미 금지되어 있는 상태이다. 그러나 어떤 측면에서는
 사소해 보이는 이 법안이 제안부터 완전 시행까지는 30여 년의 시간이 걸
 리는 셈이다. 그만큼 많은 이권이 걸려 있고 반대가 완강하다는 의미이기
 도 하다.

유럽에서 잠시 생활하는 동안 가장 인상 깊었던 제도는 달걀을 판매하
 는데 있어 사육방법을 표시하고 그 가격에 차등을 두는 것이었다. 짧은 순
 간이나마 이 표시는 소비자의 심적 불편함을 야기한다. 전통적인 방법으로
 놓아서 사육한 닭에서 생산된 달걀은 새장 사육한 경우에 비해 약 2배에
 가까운 가격이 매겨져 있다. 물론 이 비싼 달걀을 사고서 나는 동물보호에
 이바지 했다는 뿌듯한 마음으로 인간의 동물 이용에 대해 정당화하는 태도
 를 가진다면 이는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사소한 법제가 이끌
 어내는 끊임없는 심적 불편함이 사육되는 동물의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동물관련 법규와 그 시행 방법이 지속적으로 이런 긴장을
 만들어 줄 수 있다면 우리가 어떤 철학적 배경을 가지는지 상관없이 의미
 를 부여할 수 있지 않을까 역시 긍정적인 생각을 해본다.

8) M. C. Appleby, “The EU Ban on Battery Cages: History and Prospects,”
 (Deborah J. Salem, Andrew N. Rowan ed.), *The State of the Animals II: 2003*
 pp159-174.